서울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마이홈센터(☏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및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모집공고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09.1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모집호수) 총 73호

(주택관리번호) 2025-980117

(모집일정)

모집공고: 9.11(목)

신청(PC·모바일): 9.22(월)~9.24(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9.26(금) 10:00

서류제출: 9.26(금)~9.30(화)

자격검증: 10.1(수)~12.5(금)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2.8(월) 17:00 이후

계약체결(순번 도래시): 별도 안내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와 “신혼·신생아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를 모집합니다.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개요]

공급대상 주택 : 총 73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목록” 참조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공고문 페이지에 주택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임대기간

내용: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임대조건

내용:

소득기준별 임대료 수준

기준 A: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기준 B: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구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내용: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전환이율: 연 3.5%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전환액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사용분 제외)가 두~세배이상 높을 수 있으며, 상주관리인 유무에 따라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80%

1인 가구: 2,878,531원

2인 가구: 4,381,602원

3인 가구: 6,101,578원

4인 가구: 6,862,470원

5인 가구: 7,224,838원

6인 가구: 7,786,469원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격

공고일(‘25.09.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9.12 ~ ‘25.09.11)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8.09.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9.1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3.09.12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비고: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세대구성원: 신청자의 직계존속

비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고: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비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비고: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외국인 배우자

비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세대구성원: 외국인 직계 존·비속

비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등록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본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와 동일한 사람

세대구성원: 태아

비고: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입주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1·2·3·4·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자산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54,000,000원 이하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서 자녀 1인 15%

완화(최대 2자녀 25%p)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원)

130%:

1인가구 5,397,246 | 2인가구 7,667,804 | 3인가구 9,915,065 | 4인가구 11,151,514 | 5인가구 11,740,362

200%:

1인가구 7,915,961 | 2인가구 11,501,706 | 3인가구 15,253,946 | 4인가구 17,156,176 | 5인가구 18,062,096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1·2·3·4·5순위)

출산자녀수(태아 포함)에 따른 총자산가액 기준

없음(105%): 354,000,000원 이하

1인(+10%p): 388,000,000원 이하

2인 이상(+20%p): 422,000,000원 이하

출산자녀수는 ’23.0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평가항목: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평가요소: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점 3점

평가요소: 나. 차상위계층 — 배점 2점

평가항목: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전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

평가요소: 가. 3인 이상 — 배점 3점

평가요소: 나. 2인 — 배점 2점

평가요소: 다. 1인 — 배점 1점

평가항목: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주택관리번호: 2025-980117)

평가요소: 가. 24회 이상 납입 — 배점 3점

평가요소: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배점 2점

평가요소: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배점 1점

평가항목: ④ 공고일까지 신청주택이 소재한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평가요소: 가. 5년 이상 — 배점 3점

평가요소: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배점 2점

평가요소: 다. 3년 미만(타지역은 가점 없음) — 배점 1점

평가항목: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인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평가요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배점 2점

평가항목: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제외,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청약신청

일정: 9.22(월) 10:00 ~ 9.24(수) 16:00

내용: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청약→입주자격확인→주택선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형 선택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마감일(9.24(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공급단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일정: 9.26(금) 10:00

내용: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급단계: 대상자 서류제출

일정: 9.26(금) ~ 9.30(화)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06100)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1부 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 담당자 앞

9.3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만 가능)

공급단계: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일정: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내용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공급단계: 예비자 순번 발표

일정: 12.8(월) (17:00이후)

내용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단계: 계약체결

일정: 개별 안내

내용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공고일(‘25.09.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9.26(금) 10:00 이후]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PC)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청약 → (왼쪽 상단 메뉴)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오른쪽 상단 메뉴바)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 기간 : 2025.9.26(금) ~ 2025.9.30(화)]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Ⅱ(전세형) 매입임대 담당자” 앞

제출기간 마감일(‘25.9.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기간 초과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내용: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

내용: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표기 없음)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내용: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 당시 가구는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신생아 가구 자격으로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발급처: (표기 없음)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용: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발급처: (표기 없음)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제출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내용: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발급처: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제출서류: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내용: 공적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차입보증금, 본임금,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발급처: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는 제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수급자

제출서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명의로 발급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제출서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차상위 계층

제출서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장애인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장애인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지적장애·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신생아 가구

제출서류:

(출산) 출생증명서(출생 신고 이전)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후)

(자녀 동세대) 신청자(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입양) 입양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발급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법원(해당 서류), 병원

[기타 제출 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내용: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내용: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을 경우 해당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내용: 신생아 가구 외에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내용: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가능 /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5.09.11 /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 청약통장 전환신청일이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처: 가입은행, 청약홈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내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처: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서류: 세대구성 확인서(예비 신혼부부)

내용: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서명 / 공고일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신생아 가구도 세대구성확인서 제출(한부모 가족 제외)

발급처: 신청자 작성(양식 첨부)

[추가 제출 서류(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대상자: 신생아 가구

제출서류: (출산) 계약일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 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발급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 행정복지센터, 병원

제출서류: (입양) 잔급지급일(입주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임신 중) 잔금지급일(입주신청 시)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발급처: 병원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유의사항: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자격·소득 등 입력사항을 사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할 것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착오 입력, 제출서류와 상이, 허위 입력 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 기준)해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임박 전에 여유 있게 신청할 것

청약자는 1인당 1개 신청만 가능(중복 또는 2채 신청 불가),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불가

청약 시 기재한 연락처로만 연락이 가능하므로 정상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반드시 입력할 것

관련항목: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후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름

외국인은 신청 불가

관련항목: 주택개방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관련항목: 동호 지정·계약체결

유의사항: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짐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주택 발생 시 지역본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진행 가능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미계약 등)하면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은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을 따를 것

관련항목: 입주관련 유의사항(기금대출)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 상환 및 증빙서류 제출

(단,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 불요.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 상담)

타 임대주택(국민임대·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해야 함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 소유 사실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관련항목: 임대조건

유의사항: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제외)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재계약 자격 등

유의사항: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2회, 3인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추가 연장이 가능(최장 14년 거주)하며, 그 외에는 최장 10년 거주입니다.

재계약 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당시 소득·자산·주택보유 여부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관련항목: 기타사항

유의사항:

동(棟) 단위로 매입한 주택에는 입주민·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닙니다.

주택 상태는 현 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여야 하며,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어도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교체 불가합니다.

가전제품 등에 하자·망실·고장이 있더라도 A/S 요청 및 보수는 입주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주소 :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담당자 앞

연락처 : 02-2015-1040